

정기안전점검보고서

(사업장용)

사업장명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점검일자	2025년 12월 03일

결 재			

본 보고서는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고용노동부 예규(제2024-231호)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과 사업주의 결재를 득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개요

근로자현황		재해발생현황						
계	55명	연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계	사망	부상		직업병
사무직	0명	전년도	51명	0	0	0	0	0.00
사무직외	55명	당해년도	55명	0	0	0	0	0.00

○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사항

【관리 및 작업장 등】

- 안전보건관리체제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감독자의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관리, 게시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의 게시 등
- 위험성평가 실시(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 안전표지,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등의 게시 및 준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재해발생보고 및 통계의 유지·관리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 안전검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신고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 보호구의 착용
- 작업시작전 점검 및 비정형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 작업장, 통로, 계단 및 정리정돈 상태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끼임재해 예방 등)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광주광역시 관광공사)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 바랍니다.

- 1.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작업장 순회점검
- 3.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4.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5.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6.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7.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8.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 9.합동 안전·보건점검(도급인,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 각 1명)
- 가. 2개월 1회 이상: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나. 분기 1이상: 가 항을 제외한 사업

[위험성 평가기준]

구 분	중대성(강도)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내 용	
	③	②	①				
가능성 (빈도)	③	9(높음)	6(높음)	3(보통)	6~9(높음)	즉시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
	②	6(높음)	4(보통)	2(낮음)	3~4(보통)	개 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태
	①	3(보통)	2(낮음)	1(낮음)	1~2(낮음)	현상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이 필요한 상태

※개선 후 중대성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3"인 경우 현상유지 가능

가능성(빈도)

- ③ 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
- ② 발생 가능성 있음
- ①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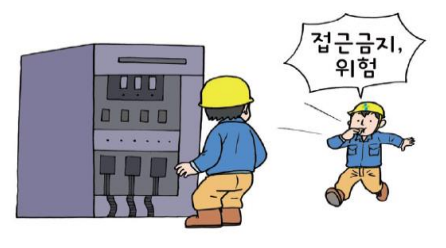
중대성(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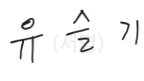
- ③ 사망·중대한 상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성 질병 초래 위험
- ②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 ① 아차사고, 무상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초래 위험

구분 (공정·설비·장소 등)	유해·위험요인	현재 안전조치	현재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가능성x중대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가능성x중대성)
전기실(1,2센터)	비상발전기 가동중 히터부 근로자 신체 접촉에 의한 화상재해 발생위험	위험성주지	4(보통) 2X2	-고온주의 경고표지, 황색색체로 도색 실시 -가동중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지교육 실시	2(낮음) 1X2
전기실(1,2센터)	배전반내 전기설비 점검중 충전부 직접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위험	절연방호구, 경고표 지	6(높음) 2X3	-활선작업시 절연보호구 착용(절연보, 절연장갑, 절연장화). 절연 방호구 설치상태유지. 활선경보기사용. 접근한 계거리유지철저	3(보통) 1X3
전기실(1,2센터)	계단을 이용하여 근로자 이동중 부주의에 의한 전도재해 발생위험	미끄럼방지판	4(보통) 2X2	-계단에 물기나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 -근로자 이동시 무리하게 서두르거나 뛰어서 이동하지 않도록 주지교육 실시	2(낮음) 1X2
전기실	전기실내 보관중인 절연보호구의 훼손, 부식 등에 의한 근로자 착용작업중 성능저하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위험	보호구 구비	4(보통) 2X2	-절연보호구는 안전인증을 거친것을 사용하고 인증기간이 유효된것일것 -작업전 외관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확인후 작업실시	2(낮음) 1X2
전기실(1,2센터)	전기실내 외부 작업자의 단독작업 및 부주의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위험	출입문 시건실시	6(높음) 2X3	-외부 작업자의 전기실 출입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 및 점검등을 실시토록 관리바람	3(보통) 1X3
제공자료 및 기타사항					

점검자	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역본부	황영욱	황영욱	사업장 확인	유승기	유승기
-----	--------------------	-----	-----	--------	-----	-----

안전점검보고서 별지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사항	점검사진																												
<p>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p> <p>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제3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하도록 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의 몸 또는 인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은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 이하인 경우에는 300센티미터 이내로,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당 10센티미터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유자격자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출 충전부에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절연 손잡이가 없는 도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p>가. 근로자가 노출 충전부로부터 절연된 경우 또는 적합한 절연장갑을 착용한 경우</p> <p>나. 노출 충전부가 다른 전위를 갖는 도전체 또는 근로자와 절연된 경우</p> <p>다. 근로자가 다른 전위를 갖는 모든 도전체로부터 절연된 경우</p>	<table border="1"> <thead> <tr> <th>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킬로볼트)</th> <th>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센티미터)</th> </tr> </thead> <tbody> <tr> <td>0.3 이하</td> <td>접촉금지</td> </tr> <tr> <td>0.3 초과 0.75 이하</td> <td>30</td> </tr> <tr> <td>0.75 초과 2 이하</td> <td>45</td> </tr> <tr> <td>2 초과 15 이하</td> <td>60</td> </tr> <tr> <td>15 초과 37 이하</td> <td>90</td> </tr> <tr> <td>37 초과 88 이하</td> <td>110</td> </tr> <tr> <td>88 초과 121 이하</td> <td>130</td> </tr> <tr> <td>121 초과 145 이하</td> <td>150</td> </tr> <tr> <td>145 초과 169 이하</td> <td>170</td> </tr> <tr> <td>169 초과 242 이하</td> <td>230</td> </tr> <tr> <td>242 초과 362 이하</td> <td>380</td> </tr> <tr> <td>362 초과 550 이하</td> <td>550</td> </tr> <tr> <td>550 초과 800 이하</td> <td>790</td> </tr> </tbody> </table>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킬로볼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센티미터)	0.3 이하	접촉금지	0.3 초과 0.75 이하	30	0.75 초과 2 이하	45	2 초과 15 이하	60	15 초과 37 이하	90	37 초과 88 이하	110	88 초과 121 이하	130	121 초과 145 이하	150	145 초과 169 이하	170	169 초과 242 이하	230	242 초과 362 이하	380	362 초과 550 이하	550	550 초과 800 이하	790
충전전로의 선간전압 (단위: 킬로볼트)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단위: 센티미터)																												
0.3 이하	접촉금지																												
0.3 초과 0.75 이하	30																												
0.75 초과 2 이하	45																												
2 초과 15 이하	60																												
15 초과 37 이하	90																												
37 초과 88 이하	110																												
88 초과 121 이하	130																												
121 초과 145 이하	150																												
145 초과 169 이하	170																												
169 초과 242 이하	230																												
242 초과 362 이하	380																												
362 초과 550 이하	550																												
550 초과 800 이하	790																												
<p>②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근로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와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이 있는 금속제 울타리를 사용하거나, 제1항의 표에 정한 접근 한계거리 이내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사업주는 제2항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감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p>																													

2025년 12월 03일	황영욱 	사업장 확인 유승기 
---------------	---	--